

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건

의안 번호	3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 14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우리구에 여권발급업무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구청 방문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로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근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함

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(m ²)	구조	시설개요	소요예산 (천원)
구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	토지	계	599.5		주차장 24면	1,169,000
		당리동 317-20	161.1			
		당리동 317-24	226.8			
		당리동 317-31	211.6			
	건물	계	795.52			
		당리동 317-20	192.96	조적조		
		당리동 317-24	159.77	조적조		
		당리동 317-31	442.79	철근콘크리트조 외		

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5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

회계명 : 주차장 특별회계

구 분			합 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비고
			필지 (동수)	면적 (m ²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m ²)	추정금액 (천 원)	필지 (동수)	면적 (m ²)	추정금액 (천 원)	
취	계	토지	3	599.5	1,169,000	3	599.5	1,169,000				
		건물	3	795.52		3	795.52					
		기타										
득	1.매입	토지	3	599.5	1,169,000	3	599.5	1,169,000				
		건물	3	795.52		3	795.52					
		기타										
득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득	3.기타 취득 (신축)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분	처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		4.매각	토지									
분	5.양여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분	6.교환 으로 취득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분	사용허가 및 대부	토지										
		건물										
		기타										

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주차장 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분	재산표시			예정가격	취득시기	취득사유	비고
	지목 및 구조	소재지	면적 (m ²)				
토지	계		599.5	1,169,000	상반기	주차장 설치	
	대	당리동 317-20	161.1				
	대	당리동 317-24	226.8				
	대	당리동 317-31	211.6				
건물	계	"	795.52				
	조 적 조	당리동 317-20	192.96				
	조 적 조	당리동 317-24	159.77				
	철근콘크리트조 외	당리동 317-31	442.79				